

#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

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의<br>번 | 안<br>호 | 22-120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 ○ 변경내용

-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(재계약) 동의안이 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되고, 재계약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수탁기관에서 재계약 포기\*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재위탁(공개모집)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※ 현 수탁법인 (학)명지전문대학 내부사정으로 재계약 포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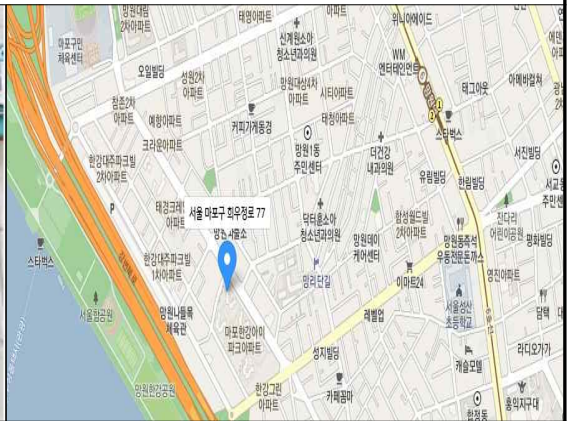
### ○ 근 거
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○ 필요성 :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(위기)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제고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: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
전반에 관한 사무

라. 위탁시설현황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재지                 | 마포구 회우정로 77 상가동 1층(망원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규모                  | 226.23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설설비                | 사무실(1), 상담대기실(1), 집단상담실(1), 개인상담실(3), 교육실(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센터<br>전경<br>및<br>위치 |   |

마. 민간위탁기간 : 2년 (2023. 1. 1. ~ 2024. 12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

○ 총사업비: 994,500천원(국비 10%, 시비 22%, 구비 68%)  
(단위: 천원)

| 구 분   | 합계      | 인건비*    | 사업비    | 운영비**   | 비 고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| 994,500 | 807,000 | 76,860 | 110,640 |            |
| 2023년 | 494,250 | 400,500 | 38,430 | 55,320  | 인건비 상승률 반영 |
| 2024년 | 500,250 | 406,500 | 38,430 | 55,320  | "          |

\* 인건비 산정 : 센터장1명, 팀장2명, 팀원3명(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)

\*\* 운영비 내역 :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기타운영비 등

<참고>

| 구 분   | 합계      | 인건비     | 사업비    | 운영비    | 비 고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|
| 2022년 | 484,000 | 385,250 | 38,430 | 60,320 |     |

#### 아. 산출근거

- 2022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 
[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-20347(2021.12.14.)]
- 2022년 구립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 
[아동청년과-24330(2021.12.24.)]
- 2022년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및 예산(안)검토  
[아동청년과-1309(2022.1.17.)]

#### 자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 제4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- 청소년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고,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으로 청소년안전망 및 상담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17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#### 나. 기타사항

- 추진일정안
  - 2022. 11. 7. ~ 11. 28. : 민간위탁운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
  - 2022. 11. 29. ~ 12. 16. :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
  - 2022. 12. 21. : 위·수탁 협약 체결

## [관계법령]

### ○ 지방자치법

####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2. 주민의 복지증진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#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점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○ 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18.>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8.>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1.>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###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점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## 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3조(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